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1. 19 선고 2020가단114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A

변론 종결 2020. 12. 15

판결 선고 2021. 1. 19

주 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2019 . 8. 29. 접수 제 10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91,562,467원 및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8. 12. 18. C을 운영하는 B와 보증기간을 2018. 12. 18.부터 2023. 12. 15. 까지, 보증금액을 90, 000, 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는 2018 . 12. 20.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는 2020 . 2. 21. 이자연체라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20 . 6. 23. D은 행에게 91,187,201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채권보전비용으로 375,266원을 지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등

1) B와 피고의 어머니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B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대 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4 . 7.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 7. 2. 망인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B는 형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2019. 8.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판결 등 참조).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예약 당시 원고의 묘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구상금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이 사건 신용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6개월 후에 신용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B의 재정상태 악화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0. 6. 23.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요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 다 43352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다 12526판결 등 참조).

위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전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물 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가 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지원

별지